

제3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3.7.4 (목) 10:00

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 
축조에 대한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#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3년 6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3년 6월 25일

### 3. 제안 이유

-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적극 실현하고 태양광 산업 선도 道로서 이  
미지 제고를 위해
- 도 산하기관(직속기관·사업소 등)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민  
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「신에너지  
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  
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# 4. 주요골자

- 대상시설 : 충북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(자치연수원) 외 6개소  
- 사용면적 : 2,974m<sup>2</sup>
- 사용목적 : 건물 옥상에 태양광 민자발전시설 설치

- 사용기간 : 설치일로부터 15년간
- 임대료 : 년25,000원(kw당)
- 허가조건 : 10년간 유상으로 임대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기간 연장

## 5. 검토의견

- '태양광민자발전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'은 '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' 건설을 위해 도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옥상 및 부지 등에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시설물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전기 생산량과 도의 임대수입 그리고 민간업체의 수익은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함.